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782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석원

피고, 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4가소15968 판결

변론종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앙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경남○○바○○○○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D은 2013. 11. 8.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 마산합포구 해운동 일성프라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끼어든 E 운전의 ○○도○○○호 카렌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다.

다. 위 택시의 승객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606,650원을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받았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합의금 2,606,650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6,65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와 관련한 형사피의사건에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이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결과 택시의 급정거로 인하여 승객에게 운동변 화(상해발생)을 초래할 정도의 관성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 나, 일반적으로 승객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관성력이라고 하더라도 급정거 당 시의 승객의 자세에 따라 부상이 생길 수도 있는 점, 실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진단과 치료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와 같은 판단만으로 택시의 급정거 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